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문서번호 : SF2018003475

2018. 03. 2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各社 보험범죄담당(SIU), 全 조사직원

제 목 : 보험범죄 제보 협조 요청

1. 귀 법인의 심도 깊은 손해사정업무 및 당사와 긴밀한 업무공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보험범죄에 대한 업계의 홍보, 예방활동, 적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험범죄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귀사의 소중한 보험범죄 혐의점에 대한 제보를 요청 드리오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범죄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당사에 보험범죄 행위 의심건을 신고 또는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但 귀사 수임件은 포상에서 제외)

2. 신고대상 보험범죄 행위 例示

- 병원의 불법행위(비급여 허위청구, 진료비허위.과다청구,허위진단서,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등)
- 정비업체 불법행위(허위청구,확대수리,불법하청공장등)
- 장기보험 사고다발자(일가족, 보험모집인, 브로커등)
- 화재보험금 편취목적 피보험자등이 고의방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배상책임보험 사고내용 가공, 허위청구
- 선박.해상보험, 재물보험(영업배상,생산물,적재물), 여행자보험, 골프홀인원보험, 레저보험, 휴대폰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허위산재),일반.기업보험, 재물도난보험, 아파트보험등 허위청구

3. 제보접수 방법

- 삼성화재 보험범죄신고센터 - 02) 7573-112
- 삼성화재 인터넷 홈페이지內 "보험범죄신고센터"
- 네이버 BAND - "보험범죄제보하기" 검색
- 카카오톡 - ID : samsungsiu112
- 담당자 - 조용진 반장 010-2823-7680

4. 포상금 지급기준 (첨부자료 참고)

※제보내용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심사後 지급

5. 포상금 지급 예외사유

- 제보 사항이 이미 조사,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요청사항

- 귀사의 소 임직원이 認知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람하여 주시고 지방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보험조사파트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40 YG빌딩 10층

담당자 : 조 용 진 반장 ☎ 010-2823-7680



수신처 : 보람화재특종손해사정(주) 주식회사 SAS손해사정, 일신화재특종손해사정(주) 대양화재특종손해사정(주) 맥클라렌스화재특종손해사정(주) 에이플러스손해사정(주) 다스카손해사정, TSA상해손해사정(주) 국제손해사정, 대영화재특종손해사정(주) 동북아화재손해사정, 리더스손해사정(주) 머큐리손해사정(주) 바른화재특종손해사정(주) 서진손해사정공사, 솔로몬화재특종손해사정(주)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킴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주)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이지화재특종손해사정(주) 유니온화재특종손해사정(주) 인코크화재해상손해사정(주)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주) 잠코화재특종손해사정, 케이엠손해사정(주) 케이원손해사정(주) 코마화재특종손해사정(주) 탑손해사정주식회사,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주) 파란손해사정(주) 프라임화재특종손해사정(주) 피에스엘손해사정주식회사, 해상손해사정(주) 에이원손해사정(주) 드림손해사정, 미래화재특종손해사정(주) 세계화재해상손해사정(주) 아세아손해사정(주) 이앤에스손해사정(주) 티앤지손해사정(주)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첨부[포상금 지급기준]

- 다음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 별로 차등 지급함
- 수사적발 시 적발금액 인정액 :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 자체적발 시 적발금액 인정액 : 당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

- (註) 1.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
 업체내부 제보 :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중 또는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범죄 사실을 제보한 경우를 말함.
 2. 고액 제보포상금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보험조사파트에서 정함.
 3.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른 기여도 적용 가능.
 4. 稅前金額 기준임.

적발금액 인정액	포상금
20.0억원 이상	1,500만원+20억원초과금액의0.5%
17.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500만원
14.0억원 이상 ~ 17.0억원 미만	1,250만원
11.0억원 이상 ~ 14.0억원 미만	1,000만원
8.0억원 이상 ~ 11.0억원 미만	800만원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600만원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0만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0만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15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70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만원
5백만원 미만	30만원

- 기타 특별한 경우 인정기준은 보험조사파트 심의회에서 정함